

#### [서식 예] 물품대금청구의 소(건축자재 판매대금)

# 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 전화·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물품대금청구의 소

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건축자재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주택건축업자인데, 원고와 피고는 20〇〇.



- ○. ○. 금 ○○○원 상당의 건축자재에 대하여 그 이행기일을 20○○. ○. ○.로 하는 건축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.
- 2. 이에 따라 원고는 20〇〇. 〇. 〇〇. 위 건축자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, 피고 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건축자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지급기일을 20〇〇. 〇〇. 〇〇.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.
- 3. 그러나 피고는 지급기일인 20〇〇. 〇〇. 〇〇.에도 위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지금까지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○○○원의 물품대금과 이에 대하여 지불각서상 의 지불기일의 다음날인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건축자재구매계약서

1. 갑 제2호증 지불각서

1. 갑 제3호증 거래장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2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 O O O O O (서명 또는 날인)

## ○○지방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
및 기 간	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손해를 증명할 필요	없이 특별히 민법 제397조),	그 손해배상액은 채권자가 그 정한 바가 없으면 법정이율에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